

www.pwc.com/id

KAFA
2014년 2분기 개정세법 요약
July 2014



pwc

New Negative List (“NLI”)

□ President Regulation No. 39/2014

- 2014년 4월 28일 발효

More Restricted	Now	Past
Distributor	33%	100%
Storage	33%	100%
E-commerce	Closed	NA
Cold Storage	33%/67%	100%
Horticulture	30%	95%
Power Plants 1 ~ 10 MW	49%	100%
Onshore oil and gas drilling	Closed	95%
Offshore oil and gas drilling	75%	95%

More Relaxed	Now	Past
Power Plants Over 10MW under PPP	100%	95%
Ports under PPP	95%	49%
Electricity transmission under PPP	100%	95%
Electricity distribution under PPP	100%	95%
Pharmaceutical	85%	75%
Advertising	51%*	Closed
L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49%	Closed

* Only for ASEAN investors

New Negative List (“NLI”), continue

□ President Regulation No. 39/2014

▪ 주요 개정내용

- NLI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산업: 과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새로운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은 산업은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을 적시 (open to investment without any requirements)
- Grandfathering clause: 소급적용 금지조항 신설. 새로운 규정에 의해 보다 제한을 받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소유권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지 않음
- Business Combination: 합병 시 허용지분율은 존속회사를 따름
- Business Expansion: 사업확장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local partner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지분율 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2년 이내에 NLI를 충족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해당 조치는 (1)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매각 (2) local investor에게 매각 (3) 자사주매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Only for ASEAN investors

Tax Flash News

□ Tax audit target for 2014

- DGT Circular Letter No. SE-15/PJ/2014
- 주요 내용
 - 2014년 세무조사 징수목표 Rp. 24조*, 전년대비 30% 상승
 - 2014년과 2015년에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에 도달하는 사업연도 집중조사
 - 주요 Target: Oil and Gas,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DGT와 다른 기관의 합동조사

* 총 세수목표 Rp. 1,110조 대비 약 2.1% 수준으로, 과거 1.5~1.6% 수준에서 상당히 높아짐

□ New Customs and Excise regulations

- MoF Regulation No.59/PMK.04/2014
 -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DGCE) on-line system 을 통해 등록 및 신청서 제출독려
 - DGCE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
- MoF Regulation No.62.PMK.04/2014
 - 수출하는 담배 주류 등의 포장에 “FOR EXPORT ONLY” 명시
 - 최소 주류 수입용량 180 ml.

Tax Flash News, continue

□ New Stamp duty regulations

- MoF Regulation No.65/PMK.03/2014
 - Stamp duty 디자인 변경, 2014년 8월 17일부터 변경된 디자인 적용
 - 기존에 발행된 Stamp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MoF Regulation No.70/PMK.03/2014
 - Stamp duty 사후납부 절차(procedures on later-application of stamp duty) 강화
 - 사후납부 대상: 법원의 증거로 문서가 제출되는 경우, 납부되지 않았거나 미달 납부된 경우 문서 보유자가 자진납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외국문서
 - 사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200% penalty 부과
 - 미납 혹은 미달납부 시 문서 보유자가 사후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비지니스(소매업과 금융업)에서는 문서 발행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Tax Flash News, continue

□ E-VAT invoice

- DGT Regulation No.PER-16/PJ/2014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규정(No.151/PMK.03/2013)에 대한 세부 규정발표
 - 201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e-FP)제도’ 시행
 - 2014년 7월 1일부터, DGT Regulation No.KEP-136/PJ/2014에 언급된 45개 일반과세자부터 우선 적용
 - 2015년 7월 1일부터, LTO, Jakarta 지역, Banten 지역, Java, Bail 등 시행
 - 2016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국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소매상(GR No.1/2012에 따름)과 부가세법 제1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는 문서(전화요금 영수증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DGT website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으며, DGT의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이를 위해 해당 일반과세자는 DGT에 인증서를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함

Tax Flash News, continue

□ Postpone of fiscal depreciation

▪ DGT Regulation No.PER-10/PJ/2014

- 소득세법 제11조 제3항은, 감가상각은 지출이 이루어진 월부터 시작하도록 규정(건설중인 자산 제외)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예외적으로 자산의 사용시점부터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사용시점부터 상각하기 위하여는 DGT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DGT 승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상기 규정이 발표됨
- 승인대상 자산: 유형자산으로 조립 등 일부산업은 제외(무형자산은 해당사항 없음)
- 승인신청 시기: 지출이 이루어진 과세연도 또는 건설이 완료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head office) 소재지의 과세관청에 신청
- 과세관청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납세자가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신청서가 완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은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직권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